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343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교회
	[redacted]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합6316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6.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90만 원, 지방교육세 299만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6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8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서의 합숙 자체를 선교훈련 등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교훈련 등은 주로 이 사건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다민족 선교훈련프로그램의 공동체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6

판사 이승철